

헤르만 바빙크(H. Bavinck)의 언약 이해와 가정사역: 성경적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언약의 실천신학적 함의

김 규 보*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의 언약 이해를 중심으로 가족생활교육의 실천신학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바빙크에 의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이다. 바빙크의 언약 이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약은 본질상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둘째,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셋째, 언약은 편무적으로 시작하되 쌍무적이 된다. 넷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 구원을 성취한다. 이 언약은 영원 전 삼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언약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가족생활에 중요한 실천적 가치를 제공한다. 첫째, 가족은 은혜이다. 둘째,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셋째, 가족은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 성화되어 간다. 언약 가정의 구성원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죄 죽임을 실천하며 함께 하나님 형상의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 넷째,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통로이다. 이와 같은 언약의 실천적 함의는 성경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실천신학적 기초가 된다.

주제어: 헤르만 바빙크, 언약, 가족, 가정사역, 성경적 가족생활교육

• 논문 투고일: 2019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6일

*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학 조교수

I. 여는 글

이 연구의 목적은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족생활교육의 실천신학적 기초를 제안하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에서 가족은 언약 관계로 유비된다(Bavinck, 2012; Keller, 2014; Piper, 2013). 따라서 언약이 가족생활에 주는 실천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생활교육의 성경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유익이 된다. 이 연구는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를 중심으로 언약의 속성을 확인하고, 가족생활에 대한 함의를 고찰한다.

1. 가족과 가족생활교육

가족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공동체이다(창 1:26-28, 2:20-25; 막 10:6-9). 가족 안에서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돌봄과 지지, 사랑을 경험하고, 삶의 기초적인 자원과 역량을 얻는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소통과 건강한 역동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의 삶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많은 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현실의 가족은 기대만큼 건강하지 않다. 많은 가정이 병리적인 삼각관계, 불분명한 경계선, 왜곡된 의사소통, 원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부정적 정서의 전이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적응¹⁾, 세대 간

1) 통계청의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2018년 8월 27일 보도 및 배포)를 보면, 1인가구가 28.6%로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었다. 이어 2인가구가 26.7%, 3인가구가 21.2%로 뒤를 이었다. 1, 2인 가구가 55.3%로 관반수를 넘고, 1995년에 31.7%였던 4인가구는 17.7%로 줄어들었다. 또한 통계청의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48.1%로 절반 이하인 반면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을 56.4%로 절반을 넘어섰다. 미혼의 경우 결혼을

세계관의 갈등²⁾, 가족의 기능 변화에 따른 혼란³⁾ 가운데 가족의 문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족은 기본적인 사회 구조로서 사회의 질서, 문화,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족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 관계 역동은 세대를 통해, 친족들과의 연계를 통해, 또 사회적 활동을 통해 거시 사회의 행동 양식과 조직원리, 이데올로기 및 문화로 확산된다(정현숙, 2016; Bredenhof & Walcheski, 2009; Todd, 1985; White et al., 2014). 따라서 건강한 가족 역동은 건강한 사회 질서와 문화의 형성의 기초가 되고, 왜곡된 가족 문화와 병리적인 가족 세계관은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즉 가족 문제는 사회 문제와 동심원상에 있다.

이런 가족의 공공성을 기초로 많은 사회기관에서는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왔다. 1900년 전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가족생활교육은 제도적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족생활교육이란 사람들의 가족 경험을 향상(improve)시키고 풍성(enrich)하게 하며, 강화(strengthen)시키기 위해 고안된 정보, 기술, 자료, 혹은 경험을 제공하는 모든 조직적인 노력(any organized effort)이

해야한다고 응답한 남녀는 각각 36.3%, 22.4%밖에 되지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1%, 71.8%나 되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어 3~4인가구로 살다가 생애주기가 노인으로 접어들면서 1~2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한 가족 형태도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가족구조 가운데 많은 이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기성세대들이 보편적인 사회 규범 및 윤리를 인정했다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자기의 윤리와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결과적으로 세대 간 세계관 갈등은 점차 고조된다. 참고, 김규보 (2018). 시물라크르 세대와 “들음” 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 기독교 교육과 상담의 통합 접근. *성경과 신학*, 85, 101-134.
- 3) 현대 사회는 성과 애정의 기능, 안전과 보호의 기능, 교육적 기능 등 과거의 가족 기능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점차 축소되거나 상실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참고, 설은주 (2010).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다(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NCFR, 2011).” 여기서 언급된 “모든 조직적인 노력”에는 다양한 교육 강좌, 심리극이나 감수성 훈련 같은 집단 활동, 가족향상 프로그램, 가족치료의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Denton, 1990; Kerchhoff, 1964; Mace & Mace, 1974; Somerville, 1967; Tennant, 1989).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가족생활교육은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가족치료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학교나 대학, 사회교육원, 교회나 성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정현숙, 2016).⁴⁾

따라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족생활교육은 가족향상, 가족치료와 엄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⁵⁾ 엄밀히 구분하는 경우, 가족생활교육은 인지교육적 측면과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가족상담은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개입에 보다 비중을 두는 개념으로, 가족향상은 예방적 차원보다는 강점을 증가시켜 보다 기능적인 가족으로 향상되도록 돕는 실천으로 이해된다(정현숙, 2016). 그러나 오늘날 가족치료에서 심리교육은 이미 상담 과정의 한 부분이다. 가정의 문제 상황과 왜곡된 관계 역동, 가족 시스템, 관련된 증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에 대한 조절능력과 회복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천 현장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 사실이다(Gearing, 2008; Goldstein &

4) 물론 한국의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사회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사회교육의 10개 영역 중 네 번째로 가족생활교육영역이 명시되면서 제도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 후 가족생활교육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발달되어 왔다. 예를 들면, 유영주와 정민자(1993)는 가족생활교육을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가족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구성원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강화시키는 평생 발달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오윤자(1992)는 가족생활에 관련된 모든 교육을 포함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단일화된 기관을 통한 통합적인 연구와 논의, 실천은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5) 최근 미국가족관계학회(NCRF)에서도 가족생활교육분과(Family Education section)을 가족생활교육과 향상 분과(Family Education and Enrichment Section)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족생활교육과 향상을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개념의 구분보다는 기관의 확장에 따른 행정적인 편의로 보인다. 참고. <https://www.ncfr.org/cfle-certification/what-family-life-education> accessed at 2019.2.22.

Miklowitz, 1995; Kiosses, Wright, & Young, 2017; Lukens, 2017). 즉 가족생활교육은 심리교육으로서 현대 가족치료의 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오늘날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많은 가족 상담의 실천은 병리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가족향상에서 강조하는 강점을 통한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둔다(Conoley & Conoley, 2009). 이는 가족치료의 범주에 이미 가족향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생활교육이 역기능적이고 혼란스러운 가족 관계 역동을 기능적이고 적응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실천이라는 점은 가족향상과 가족치료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Fisher & Kerckhoff, 1981).

더 나아가 미국가족관계학회(NCRF)가 명시한 가족생활교육에서 함양하는 “지식과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술, 인간 발달에 대한 지식, 바른 의사결정 기술, 긍정적 자아 존중감, 건강한 대인관계 기술”은 가족향상과 가족치료의 개입과 같은 맥락에 있다. William Doherty(1995)의 연구도 가족생활교육, 가족향상, 가족치료를 한 연속성 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제시한 가족개입(Family Involvement)의 모델에서 1단계(Minimal Emphasis on Family)와 2단계(Information and Advice)는 가족생활교육과 가족향상이, 3단계(Feeling & Support)와 4단계(Brief Focussed Intervention), 5단계(Family Therapy)는 가족향상과 가족치료의 개념이 중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생활교육, 가족향상, 가족치료는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해 분리될 수 없는 실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의미에서 가족생활교육은 가족향상, 가족치료와 엄격히 구분되기보다 연속선상에 있는 가정사역(Family Ministry)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성경적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언약 이해의 필요성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가족생활교육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해졌던 실천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창 1:28)”하신 것, 그들을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5-17)”하신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창 2:24)”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최초의 가족생활교육이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기초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다양한 형태로 가족생활교육을 실천해왔다(신 6:4-9). 출생 후 8일 째가 되는 날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자녀들을 초청했다(창 17:12, 24-25; 레 12:3).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남자아이는 생후 40일, 여자아이는 생후 80일이 지나 성전에 올라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고(레 12:6-8),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언약백성의 삶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하였다(출 20:8-11; 신 5:12-15). 또한 그들은 매년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므로 언약의 의미와 은혜, 언약백성의 정체성과 의무를 다음 세대에 가르쳤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절기에 참여하면서 절기의 규례와 상징, 의미에 대해 질문할 때, 부모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다(출 12:26-27; 13:8-9; 레 23:42-43; 신 4:9; 6:20-25).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세대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언약의 진리를 가르쳤다(이희성, 2013).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교육이었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직접

만지며 함께 준비하고, 배경과 역사에 대해 대화하고, 절기의식에 직접 참여하면서 구원 역사의 은혜와 약속,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삶을 체득하는 전인교육이었다.

신약시대에는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 되심으로 구약의 율법보다 온전하고 충만한 의미의 복음이 가족생활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요 1:11-12). 그리스도와 교회의 새 언약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생활 원리가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언약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에 기초한다(엡 5:21-6:4). 사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촉구하며(롬 8:29; 엡 4:15,32)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마 5:16; 벰전 2:12)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을 강조했다(마 5:13-14). 이는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활양식이었다(엄예선, 2007). 신약의 가정은 때때로 교회로서 기능하기까지 했다(고전 16:23; 몬 1:2; 골 4:15). 그들에게 가정은 역동적인 신앙 계승의 장소였고, 혈연적 유대를 넘어 언약이 갱신되고 성취되는 종교적 공동체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적 관점에서 가족생활교육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계승하고,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가정 가운데 이루고, 그 나라를 후속 세대와 거시사회까지 전파하는 신앙 교육으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하나님의 가정사역 중 한 방편이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사역의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경적 개념을 간과한 채 현대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이론을 중심으로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그 이론들이 공헌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고려하지 않는 이론에 기초한 실천은 자칫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빠질 위험이 있다. 김준

수(2010)는 오늘날 많은 가정사역, 심지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목회도 대부분 미국에서 개발된 사회복지 개념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회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훈련 받고, 가정 안에서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신앙을 함양해야 함을 주장한다. 설은주(2010)도 가정의 거룩함과 본질, 사명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인격과 신앙, 사랑과 봉사를 경험하고 배우는 하나님의 선교 도구이자 선교의 장이 되도록 촉진하는 교회의 가족생활교육을 강조한다. 즉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성경에 근거하면 결혼은 인간이 고안한 제도가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신적 기관이다(창 2:23-25; 정정숙, 1994; Bavinck, 2012; Noebell, 2013).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의 기초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할 때, 많은 학자들은 언약의 개념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John Piper(2013: 30-31)는 결혼을 “언약적 헌신에 근거한 거룩한 언약”으로 이해하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Fred Lowery(2003)도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 됨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룩한 소명이라 강조한다. Timothy Keller(2014: 146)도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라 말하고, 정정숙(1994: 86-87)도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기초한 언약기관”으로서 언약은 삶의 윤리이자 행복의 원리임을 강조한다. Balswick과 Balswick(1995: 18)은 모든 가족관계의 시작은 “언약적 서약”이며 언약 관계 안에서 구성원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나누고, 안전감을 느끼며, 은혜 가운데 서로의 역량을 강화시켜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개진하면서 언약

개념을 소개하지만, 언약의 속성이 제공하는 실천적 가정생활의 원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경우 가족생활교육은 언약보다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 혹은 관계 심리학에 기초한 의사소통 및 가족체계 이론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설은주, 2010; 엄예선, 2007). 그러나 만약 가정이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언약에 기초한다면, 가정생활에 대한 실천적 원리 또한 언약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약의 속성이 실제로 오늘날 가족생활교육에 주는 실천적 함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의 사상을 중심으로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바빙크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가 개혁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언약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을 개진했고, 가정을 “인간이 분리할 수 없는 평생의 언약(a lifelong covenant, indissoluble by human authority)”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Bavinck, 2012: 7).

II. 펴는 글

1.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 이해

헤르만 바빙크는 16-17세기 개혁신학의 계보를 이을 뿐 아니라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 로버트 레이몬드(Robert L. Reymond), 안토니 후크마(Anthony A. Hoekema), 마이클 호든(Michael Horton) 등 현대 신학자들에게 개혁주의 교의학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학자이다(Bavinck, 2011a). 이 장에서는 바빙크의 언약 이

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빙크에게 있어서 언약은 은혜가 인류에게 전달되는 형식이다. 바빙크(2011b: 238)는 첫 계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은혜는 언약의 형태를 취한다고 주장하며 복음 전체를 은혜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바빙크는 언약의 형태로 전달되는 은혜에 대해 개혁교회가 행위언약, 자연언약, 은혜언약, 구원협약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왔음을 밝힌다.

개혁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신약과 구약의 참된 종교를 점점 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과 맺은 언약(행위언약), 또는 노아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피조물과 맺은 언약(자연언약), 또는 선택된 백성과 맺은 언약(은혜언약)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개혁교회는 여기에 머물러 서지 않고, 시간 속에서의 이러한 언약들을 위한 확고하고 영원한 토대를 하나님의 작성 가운데서 추구했으며,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작정을 다시금 신적 본질 자체의 삼위의 언약(구원협약)으로 이해했다(Bavink, 2011b: 259).

사실 구원협약(*pactum salutis*)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전통 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⁶⁾ 바빙크도 구원협약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며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바빙크(2011b: 261)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

6) 구원협약(*pactum salutis*)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uller, R. A. (2007). *Toward the Pactum Salutis: Locating the origins of a concept*.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8, 11-65; Muller, R. A. (2003).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The Triunity of Go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p 265-67. “구원협약”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언약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구원언약”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용하는 바빙크(2011a) *개혁교의학 (Gereformeerde dogmatiek)*의 번역본(박태현 역)이 “구원협약”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구원협약”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구원협약의 용어가 언약의 속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로서 구원협약은 완전히 변증할 수 없는 형태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e.g., 시 139:16; 고전 2:7; 엡 1:4; 엡 3:11; 딤후 1:9). 바빙크(2011b: 262)에 의하면, “구원의 전체 사역을 함께 고안하고, 확정하고,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이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다.” 즉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구원을 함께 계획하셨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각 위가 자신의 독특한 사명을 수행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해이다.

더 나아가 바빙크는 구원협약은 신적 본질 내에 있는 언약의 실재라고 강조한다. “구원협약은 신적 본질 가운데 있는 삼위의 관계와 삶을 언약의 삶으로, 최상의 자의식과 최상의 자유를 지닌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언약은 여기, 신적 본질 내에서 그 풍성한 실재를 갖는다”(Bavinck, 2011b: 271). 따라서 바빙크에게 있어서 구속협약은 삼위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 전의 언약이며, 이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중보자로 선택되었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로서 그리스도는 창조 후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영원 가운데 발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바빙크에게 구원협약은 영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창조세계 안에서 성취되는 일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이는 시공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의 영원한 기초이다.

구원협약은 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과 이를 위해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행하신 것 사이에 연결 고리를 형성한다. 시간 속에서 계시된 은혜언약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한 토대에 기초한 것이다. 은혜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가운데 확고한 뿌리를 두고 있고, 은혜언약은 이 작정과 언약에 대해 틀림없이 뒤따르는 적용과 시행이다(Bavinck, 2011b: 262).

바빙크에 의하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으로서 구원협약은 창조 세계 안에 인간과의 은혜언약의 형태로 성취된다. 바빙크(2011b)는 구원협약, 행위언약, 은혜언약에 대한 구분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언약이 넓은 의미에서 은혜언약임을 강조한다.⁷⁾ 그는 세분화된 언약들에 시공간적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 구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라짐을 주장한다. 바빙크(2011b)에 의하면, 구속협약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수립된 은혜의 언약이었고, 아담 안에서 인류와 맺은 행위언약은 제정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맺은 은혜언약(좁은 의미)을 고려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의미의 은혜언약은 원형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영원으로 확장되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언약(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은 그리스도 언약을 원형으로 수렴되어 영원 가운데 은혜로 성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빙크에게 있어서 모든 언약은 궁극적으로 은혜언약이다.

모든 언약이 곧 은혜임을 강조하는 바빙크의 언약 이해는 구원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낸다. 바빙크에 의하면, 언약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인간을 위해 성취하시며 성령이 그것을 적용하신다. 바빙크는 언약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실로, 인간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인간과 세운 은혜언약 가운데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재창조의 사역을 계획한 후에 실행하는 이는 다시금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7) 이를 개혁주의는 언약의 통일성으로 이해한다. 언약은 율법 이전이나, 율법 아래나 율법 이후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며, 은혜를 내용으로 삼고, 은혜를 영화롭게 하기에 본질상 하나이다. 언약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문병호(2016).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95-302; 한병수(2014). 언약의 통일성: 칼빈과 러더포드 중심으로. 개혁논총, 31, 79-121; 한병수(2015). 언약의 교부적 통일성. ACTS 신학저널 23, 35-68.

은혜언약은 영원 전부터 삼위의 구원협약 가운데 마련되어 있었고 타락한 후에 곧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되었다....피조물의 타락 후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피조물에게 이른다(Bavinck, 2011b: 262).

언약교리는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의 전체 사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한다.....구원을 계획하고 원한 분은 성부다. 구원을 보증하고 실재적으로 획득한 분은 성자다. 구원을 수행하고 적용하는 분은 성령이다 이 구원의 전 사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것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이다(Bavinck, 2011b: 279).

즉, 바빙크에게 언약의 작성과 실행, 유지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다. 칼빈과 바빙크의 언약론을 비교하면서 우병훈(2013)은 바빙크가 모든 언약을 은혜언약으로 부른 것은 언약의 실행과 유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주해한다. 실제로 바빙크는 언약 교리는 구원 사역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빙크 언약신학의 강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바빙크는 언약 교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됨을 지적하며 언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는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은혜언약은 이러한 택자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묘사한다. 은혜언약은 선택의 물줄기가 영원을 향해 진전해 가는 경로다. 그리스도는 은혜언약 안에서 진실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머리와 대표자로서 활동하되, 그들을 말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보증하되, 그들 역시 스스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 자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언약에 동의한다. 은혜언약은 물론 그리스도와 체결되었으나, 또한 그리스도를 넘어 그리

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영육 간에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그러므로 은혜언약은 그 공표 시에 곧바로 믿음과 회개를 요구한다(Bavinck, 2011b: 280).

다시 말하면, 바빙크에게 있어서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통로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을 촉구하고, 삶의 방향과 원리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가르침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할 때 주목해야 할 바빙크의 언약 이해는 언약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있다. 바빙크에 의하면, 언약은 편무적(片務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언약의 편무성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편무성이다. 바빙크(2011b: 248)는 하나님을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법령을 부과하는 주권자”이며 “자신의 약속을 주고, 스스로 그 약속의 성취에 매이며, 희생제물의 조각 사이를 지나” 가는 분으로 묘사한다. 즉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무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의 율법을 의무로 부여할 수 있으시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편무적이다.

둘째, 언약은 인간에게 부여된 언약의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셨다는 점에서 편무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의 의무를 제시하시고, 죄인된 인간이 실천하지 못한 그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다 이루셨다. 따라서 바빙크의 지적처럼 언약은 편무적이다.

그리스도는 중생과 믿음과 회개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성취했다... 그리고 성령은 이것들을 적용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언약의 시행은 이렇게 요구하는 형식, 조건적 형식

을 취하는데 이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적적 본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며, 심지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 취급하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에 관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도 책임을 묻고 변명할 수 없는 존재로 세우며, 의식과 자유를 지닌 존재로서 이 언약에 가입하고 범죄로 인해 이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은혜언약은 편무적 계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Bavinck, 2011b: 281).

그러나 편무적으로 시작된 언약은 쌍무적(雙務的)이 된다. 언약의 쌍무성에 대해서도 바빙크의 이해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자신을 묶으심이다. 주권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의무도 지실 책임이 없으시다. 그러나 바빙크(2011b: 248)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엄숙한 맹세”로 언약에 자신을 묶으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바빙크(2011b: 248)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은 사실상 쌍방의 “계약(pactio)”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의 “서약(sponsio)”이라 지칭한다. 의무를 지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은혜로 자신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로 스스로 의무를 지신 것이다.

둘째, 언약의 쌍무성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를 스스로 대신 지심으로 인간에게 “조건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 순종으로서 의무”을 주심이다. 바빙크는 사실상 은혜언약은 어떠한 요구도 조건도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언약의 의무를 성취하셨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를 토대로,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의지적으로 언약을 지키도록 직접 일 하셨다. 그러나 바빙크는 하나님께 다 이루신 언약의 의무는 언약의 수혜자를 재창조하여 새로운 존재로서 자발적인 순종의 의무를

세운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유지하고 실현한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며 삼위 자신 내에서 전적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이 언약은 쌍무적 언약이 되며,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수용하고 지키도록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언약 가운데 매우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나 은혜의 사역이 인간의 의식 가운데 선명하게 반사되고, 인간의 의지가 힘 있게 활동하도록 일깨우는 것이다. 은혜언약은 인간을 죽이지 않고, 목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이 언약은 인간 전체, 인간의 모든 능력과 힘, 영혼과 육체, 시간과 영원을 포함하며, 인간 전체를 품고, 인간의 능력을 파괴하지 않되, 인간의 무능을 제거하며, 인간의 의지를 죽이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의 의식을 마비시키지 않고, 흑암으로부터 구언하며, 전인을 재창조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갱신되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한다. 은혜언약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란 인간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해 획득되고, 전인의 재창조 가운데, 인간의 밝아진 의식과 회복된 자유 가운데 그 승리를 기린다고 선언한다(Bavinck, 2011b: 281)

따라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 “조건으로서의 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새롭게 순종하라는 권면을 받고 그 의무를 진다”(Bavinck, 2011b: 249). 그 의무는 이제 더 이상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이미 언약 가운데 수용된 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로서의 의무”이다(Bavinck, 2011b: 248). 그분의 은혜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인으로 재창조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질 수 없었던 언약의 의무를 변화된 이성과 회복된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작정되고, 실현되며, 성취되는 은혜의 언약은 유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언약의 유기체성은 바빙크가 특별히 강조하는 언약의 특성이다. 바빙크에 따르면, 택한 자들은 서로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언약의 은혜는 택한 자들의 교회를 넘어 택한 자들과 관련된 모든 구조적 유기체로 확장된다.

그들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고, 그들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한다....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와 더불어 아담 아래 있는 인류와 연관되어 존재한다.....첫 번째 아담 안에서 타락했던 인류를 두 번째 아담 안에서 회복되었으며, 단지 몇몇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있는 택자들 안에서 유기적 인류와 세상 자체가 구원을 받는데, 단지 선택된 사람들만 아니라,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고, 아담 안에 있는 본래의 창조로부터 유래한 구조적 유기체 역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은혜언약은 개인에게서 개인으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진전한다.....이것은 결코 한 사람과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람의 후손과 더불어 체결된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이다....그 사람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역시 포함된다.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의 존재만 아니라,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 부모 혹은 자녀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가정, 재물과 소유, 영향과 권세, 그의 직분과 직업, 지성과 마음, 학문과 예술, 사회와 국가에서의 삶을 포함한다 (Bavinck, 2011b: 282).

따라서 바빙크에 의하면, 언약의 영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가정, 공동체, 사회문화와 국가까지 흘러간다. 언약은 역사 속에서 유기적으로 전 인류와 사회에 영향을 구원을 야기한다. 그러나 바빙크가 여기서 주장하는 유기체성이 만인구원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우병

훈, 2014). 바빙크에게 유기체성은 다양성(diversity)이 통일성(unity) 있게 조화(orchestrated)를 누리는 개념으로 창조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 (Eglinton, 2010). 이는 삼위 하나님의 내적 본질(ad intra)이 세상 가운데 발현됨(ad extra)이다. 이것은 비록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약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일반은총 아래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고, 택함 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은혜가 관련된 구조적 유기체로 흘러가 다채로운 창조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조화롭고 통일되게 회복하고 새롭게 세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바빙크에게 있어서 언약은 창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소통하고 개입하시는 방편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포함한 유기체인 창조 세계가 통일되고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 가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는 태초에 인류에게 주신 “문화 명령”과 같은 맥락에 있다.⁸⁾ 따라서 바빙크는 언약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창조 질서와 연결시킨다. “은혜언약은 창조 질서와 연관되고, 창조 질서로 거슬러 올라가며, 창조 전체를 자기 안에 질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포함시키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의 기관이다”(Bavinck, 2011b: 282).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바빙크를 중심으로 살펴본 언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언약은 본질상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2)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3) 언약은 편무적으로 시작하되 쌍무적이 된다. 4)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인 구원을 성취한다. 이 언약은 영원 전 삼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8) 바빙크(2011a)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과 분리되지 않는다. 온 땅을 다스림은 유기체적인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전 인류, 더 나아가 사회 문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2.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언약의 실천신학적 함의

바빙크가 지적했듯이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가족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성경은 결혼관계를 언약으로 이해한다(잠 2:17; 말 2:14). 언약으로서 결혼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언약을 맺고 배우자와 수평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룩한 약속이다(Bavinck, 2012; Keller, 2014).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이해되는 결혼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원형으로서 실천적 원리와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 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빙크의 언약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생활에 대한 언약의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언약은 은혜이다: 가족은 은혜이다.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작성하시고, 은혜로 실행하시며, 은혜 안에서 완성하시는 은혜 언약이다(Bavinck, 2011b).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에 선행하고, 그 은혜는 언약으로 인 처지며, 언약은 은혜로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언약으로서 가족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된다. 즉 가족생활의 근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 됨의 은혜이다. 따라서 가족은 언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치는 공간이며,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관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은 서로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하며,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배우자는 은혜이다. 부모는 은혜이다. 자녀는 은혜이다.

그러나 많은 현대 가정에서 은혜가 “조건”으로 변질되어 간다. 노먼 라이트는(N. Wright, 1982)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언제나 결혼 초기처럼 낭만적일 것이라는 기대, 그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래야 한다는 기대, 배우자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물어

보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알 것이라는 기대, 진실로 서로 사랑한다면 부부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정서를 느끼며, 같은 것을 원해야 한다는 기대이다(Wright, 1982: 16-17). 이런 비현실적 기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배우자의 “조건”으로 바뀐다. 즉 나의 배우자는 결혼 초 기처럼 낭만적인 감정을 내게 갖고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감정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력 있어야 하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채워주어야 하며, 자신과 같은 방식, 같은 정서, 같은 욕구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우자가 변질되었다거나 결혼을 잘못했다는 왜곡된 생각을 갖곤 한다. 그러나 그런 왜곡은 실제로 자기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비현실적인 기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에 대한 왜곡된 기대는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주로 일차 양육자로서의 부모)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곤 한다. 학자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과거의 갈망 및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Alexander & Luck, 2018; Bowlby, 1982; Hendrix, 2007; Maltby & Hall, 2012). 관계중심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양육자와 정서적 결합, 곧 애착(attachment)을 형성하는데, 이 경험은 이후 타인과의 관계 역동의 발판(platform)가 된다. 아동이 양육자와 경험하는 애착은 아동의 기억에 내재(encoding)되어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고, 이는 이후 타인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해석적 필터로 작용한다(Bowlby 1990; Leahy, 2015). 이 내적작동모델은 타인에 대해 느끼는 내적 감정과 관계 역할에 대한 무의식적 기대(gut-level expectation)를 형성한다. 그 결과 어린 시절 양육자, 혹은 성장하면서 경험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는 현재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기대에 큰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 원가족에서부터 비롯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계 경험을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사하게 되어 내면의 부모

이미지(이마고)와 실제 배우자와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Alexander & Luck, 2018). 그 결과 과거 애착 대상으로부터 충족하지 못한 정서와 갈망을 오늘의 애착 대상인 배우자에게서 구하고, 배우자를 통해 원가족의 문제까지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표, 내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갈망을 갖고, 만약 투사된 정서와 기대에 오늘의 배우자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심지어 부모와 자녀도 점차 “조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모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모가 경제사회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면 부모를 비난하기도 한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부부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스스로 자녀 낳기를 포기하기도 한다.⁹⁾ 노년의 부모가 노환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부담이 되는 경우, 부모 부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¹⁰⁾ 반면, 어떤 부모는 자녀가 명문대를 가지 못하거나 취직을 하지 못하는 등 부모 수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녀에게 폭언을 하며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기도 한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장애 등의 문제를 보일 때 양육을 포기하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부부는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얻고자 유전자 편집(Gene Editing)을 시도하기도 한다(Liang et al., 2015).

9)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84.8%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를 자녀교육비 부담(16.8%), 자녀양육비 부담(14.2%), 소득 및 고용 불안정(7.9%) 등 경제적 이유로 분류되는 응답이 47.1%나 되었다.

10)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6.7%에 그쳤다.

이런 현실 가운데 “은혜”를 강조하는 바빙크의 언약 이해는 중요한 가족생활의 원리를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언약에 들어오기 위해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하지 않으셨다. 율법이라는 조건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옛 언약의 의무도 궁극적으로 새 언약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셨음으로 우리를 향한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따라서 언약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은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¹¹⁾ 한 가족 됨은 은혜이며 서로의 존재는 은혜이다. 은혜는 가정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Bavinck, 2012).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조건에 지배되었던 서로를 향한 실망과 섭섭함은 점차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공훈의 마음이 솟아날 것이다.

2)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언약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언약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Bavinck, 2011b). 바빙크(2012: 35)는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신실성”을 담고 있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신성” 곧 그분의 주권을 가져오는 거룩함이 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Piper(2013)도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천이라 말한다. 그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31-32)라는 바울의 언급을 통

11) 여기서 애인과 배우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애인으로 교제하는 경우 “조건”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제하는 이의 나이, 성품, 신앙, 가치관, 직업, 환경 등은 결혼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배우자”는 결코 “조건”이 될 수 없다. 언약은 조건을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함으로 조건을 이루지 못할 지라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태초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새 언약관계를 반영하고 드러내기 위한 작정 가운데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Piper(2013)는 한 쌍의 남녀가 결혼서약을 하는 순간 중심인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 이시며, 그 언약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강조한다. 즉, 언약으로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위와 같은 강조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대 가족생활에 주는 함의가 있다. 첫째, 언약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자기중심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현대 가정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 현대 가정은 점점 “자기”가 주인이 되어 간다. Timothy Keller(2014: 71)는 가정생활의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라 지적한다. 더 나아가 그는 상대방의 자기중심성을 자신의 자기중심성으로 응수하는 죄성이 현대 가정을 붕괴하는 핵심이라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고한다. Keller(2014: 72)의 말이다. “자기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해 하며, 억울해 하고, 낙담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점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관계에는 발전이 없고 늘 자기 연민과 분노,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 가정의 이런 왜곡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언약의 속성은 다시금 가정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가정의 주인을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주권의 이양은 결국 자기 생각과 판단을 진리로 착각하고 자기주장을 고집 부리던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권면한다(엡 5:21).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함, 곧 그분의 주권에 대한 신뢰의 질

서가 회복될 때 각 가정의 구성원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로를 존중하며 섬겨줄 수 있다.

둘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은 언약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함의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의 성취는 인류 구원을 향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하심이었다(Bavinck, 2012; Garland, 2012).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개혁교회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1장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 Jonathan Edwards(2014)도 성령은 모든 창조세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다(김준, 2017; Piper, 2010). Edwards(2014)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내적 탁월함, 곧 거룩, 지식, 사랑, 자비, 선, 아름다움 등 그분의 온전한 속성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내적 탁월함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의 탁월한 속성과 발산되는 외현을 경험함으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는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가정 안에서 각 구성원이 하나님의 탁월한 내적 속성, 곧 그분의 거룩과 사랑, 지식, 자비, 선, 아름다움 등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the image-bearer of God)로서 온전히 담아내고, 가족생활 가운데 드러내며, 서로를 통해서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족생활은 각 가족 구성원에게 영광

과 행복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인간의 영광과 행복과 별개가 아니다. Piper(2003: 52)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신의 피조물의 영광도 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준 피조물의 탁월함과 행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연계한다. 이 논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임을 분명히 하는 신명기 말씀도 뒷받침해준다(신 10:12-13).

그러나 죄인 된 인간이 갈망하는 행복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의 행복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다(롬 8:5-8). 하나님이 피조물의 영광과 행복을 구하면서 추구하시는 자신의 영광은 곧 자기 자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속성의 담지며, 그 탁월함의 발산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이 피조물 된 인간을 통해서 각 가정과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의도하신 참된 행복이 인간에게 허락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영광의 추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과 실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전 10:31). 그러나 그 실천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 가운데 피조물 된 우리의 영광이 함께 드러남이다.

따라서 언약 가정 안에서 각 구성원들은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을 품고 서로에게 흘러보내고 서로를 기뻐함으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의 행복이 임한다. 언약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각

구성원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함으로 함께 부름 받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3) 언약은 편무적이나 쌍무적이 된다: 언약 가족은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 성화되어 간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언약 가운데 “스스로 의무를 짊어졌다”(Bavinck, 2011b: 249).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된 인간에게 마땅히 행하셔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만 피조물 된 인간에게 말씀으로 의무를 제정할 수 있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 자신을 언약에 묶으셨고, 언약의 의무를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성취하셨다. 언약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따라서 언약은 편무적이다. 마찬가지로 언약으로서 결혼은 편무적이다.¹²⁾ 언약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서약”이듯이, 결혼은 각자의 편에서 서로를 향한 편무적 “서약”이다. 결혼은 상대방에게서 받을 것을 권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의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 결단하는 언약이다.

이는 가족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왜곡된 실천에 경종을 울린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결혼생활에서 스스로에게 상대방에 대한 “권리부여(entitlement)”를 하고 있다. 권리부여란 스스로 특별한 존경과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자기애적 특징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생활 가운데 상대방으로부터 섬김과 돌봄, 로맨틱한 감정과 성적 흥분을 누릴 권리가 스스로에게

12) 여기서 주장하는 결혼 관계에서 편무성은 바빙크 언약 개념의 두 번째 의미로서의 편무성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로서 편무성이 아니라, 언약의 조건을 은혜 가운데 스스로 성취함으로서의 편무성이다.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만약 결혼 생활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을 권리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념을 의미한다 (Virkler, 2006: 59). 언약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획득하려는 이런 실천은 은혜라는 언약의 근본 원리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편무적으로 성취되는 언약의 속성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왜곡된 권리부여는 결국 언약 결혼을 깨뜨리는 내적 합리화의 주범이 된다. 결혼 관계에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권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언약의 속성이 아니다. 은혜언약의 편무성은 서로를 향한 권리주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섬김이 언약의 파트너를 향한 실천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발적인 사랑의 섬김을 권리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애적 죄성의 발로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의 의무를 짊어지시처럼, 언약 가정에서 상대방을 향한 의무는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묶는 실천이다. 따라서 참된 언약의 파트너는 반지 못해 섭섭해하기보다 양육과 가사, 친밀감과 성윤리, 경제사회적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과 돌봄, 사랑의 의무에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그러므로 언약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쌍무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 순종은 더 이상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서로에게 강요할 권리도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self-giving love)이다.¹³⁾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주를 면하기 위해 지어야 할 순종의 의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계명이 되는 것처럼, 은혜 밖에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의무는 권리 주장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며 깨어짐의 근거가 되지만, 은혜 안

13) 김규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홀에 기초한 관계 회복의 실천 중 하나를 자기헌신적 사랑(self-giving love)로 제시한다. 이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실천인 동시에 치료적 실천이다. 김규보 (2019).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그리스도 닮음의 실천적 함의. *성경과 신학*, 90, 99-140.

에 있을 때 동일한 의무는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이 된다. 따라서 참된 언약 가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돌봄과 섬김의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성취한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순종은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하다. 언약의 편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Bavinck, 2011b). 인간이 죄를 범해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빌 2:6-8). 그리고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한다(빌 2:5).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까지 보여주신 이 마음과 실천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표현이다(요일 3:16; 4:16). 비록 죄의 오염 가운데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언약 가정의 각 구성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감으로 이 실천을 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이 섬김은 결코 자기 파괴적이지 않다. 이 실천은 오히려 건강한 자기 사랑에 기초한다. 성도의 건강한 자기 사랑은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육신의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김규보, 2019; Calvin, 2011).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던 옛 자아를 못 박고, 성령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새 자아로 살아간다(갈 2:20).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용서, 구원, 지혜를 얻는다(엡 1:3-9). 그들은 새로워진 지성과 마음, 실천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된다. 그렇게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대

하듯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섬김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누리게 되는 특권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 스스로 “종의 형체로” 오심으로 타인을 위한 섬김의 역할에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다(김규보, 2019). 따라서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섬김은 사랑과 존귀함이 충만한 은혜의 실천이다.

은혜 안에서 편무적이지만, 사랑 가운데 쌍무적이 되는 언약은 용서를 강조한다. 언약을 깨뜨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초로 서로 용서할 것을 권면한다(마 6:12; 18:35; 눅 17:4; 엡 4:32; 골 3:13). 용서의 실천은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필수적이다(김규보, 2019; 김준, 2017; 안경승, 2008). 김준(2017)은 가족 관계 안에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가족 갈등을 해결하여 결혼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뜻이라 강조한다. 갈등 가운데 부부가 서로 용서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며,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실천이다(김준, 2008).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이 죄와 언약함으로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에도 참된 언약 가족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은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언약을 갱신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졌던 옛 언약이 다시 새 언약으로 갱신되었듯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용서는 언약을 보다 견고히 지키는 방편으로 갱신되어 다시금 관계를 회복한다. 바빙크(2011b: 249)는 “우리가 때때로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의심해서도 안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된다....은혜언약은 우리의 미덕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흔들릴 수 없이 확

고하게 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언약 관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의심해서 지속적으로 죄책과 수치 가운데 매몰되어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서 은혜를 기만해서도 안 된다는 실천적 촉구이다. 즉, 언약 안에서 용서에 대한 강조는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 오히려 용서로 실천되는 언약의 갱신은 더 이상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죄 죽임(mortification of sin)의 실천을 촉구한다.¹⁴⁾

죄인이 자신의 죄성을 가장 깊이 깨닫는 순간은 십자가 사랑 앞에서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분을 조우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값어치 없는 사랑의 용서임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게 되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게 된다. 이 용서의 경험은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정서적 혐오, 더 나아가 죄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결단을 야기한다.¹⁵⁾ Piper(2010: 81)는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한 은혜는 상대방이 내게 범한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능력,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 변화되는 마음과 힘, 용서할 일을 더 적게 하고, 악을 덜 저지르고, 덜 성가신 존재가 되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언약 가정은 변화와 성숙의 자리가 된다. 언약 가정은 서로를 다양한 죄로부터 지키고, 서로를 치유하며,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주는 성화의 장소이다. 언약 가정 안에서 각 구성원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죄성을 변화시켜가며 함께 하나님 형상의 온전함을 이

14) 죄 죽임(mortification of sin)은 개혁주의 신학자 존 오웬이 강조한 성도의 실천 중 하나이다. 죄 죽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Owen, J. (1991). "Of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In W. H. Goold (Ed.), *The Works of John Owen Volume 6* (p. 12-119).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5) 회개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다음을 참고하라. Joseph, A. (2007). *회개의 참된 의미* (이길상 역, *An alarm to the unconverted*). 서울: 목회자료사.

루어 간다. 이 과정 가운데 언약 가정은 서로의 언약함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며, 기꺼이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 간다.

4) 언약은 유기체성을 갖는다: 언약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통로이다.

유기체성은 바빙크가 특별히 강조하는 언약의 속성이다. 바빙크에 의하면, 언약의 유기체성은 창조질서와 연관되고, 깨어진 질서의 회복을 지향한다. 바빙크(2011b: 282)는 언약으로 묶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별적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택함 받은 온 인류, 가정, 공동체, 사회문화, 국가 등의 거시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통해 피조세계는 타락으로 잃었던 창조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고 통일되게 유기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약으로서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언약의 목적을 보이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심으로 유기적인 창조 세계가 통일되고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

언약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전수되며 주권적으로 실천되는 직접적인 통로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가정은 할례, 제사, 절기 등을 통해 그의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언약 안에 두었고, 함께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그 의미를 가르쳤다. 그리고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로 흘러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되어 택하신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된다. 언약의 유기체성을 고려하면, 가정 안에서 구성원은 유기적 구조로서 언약의 일원이 되고, 언약을 전수하며, 유기적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도구가 된다. 이는 언약 가정을 통해서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거시세계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빙크(2012)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가정은 각 구성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 스스로에게와 서로에게, 더 나아가 창조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소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언약 가정은 거시적인 사회문화와 분리되지 않는다. 언약 가족의 유기체성은 연결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기초로 새로운 사회문화가 형성될 것을 고대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문화는 종교적 진리에 무관심하고, 보편적인 진리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포노사피엔스(Phono-Sapiens)”라고 불리는 현대 인류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가상의 플랫폼 상에 실존하는 자아보다 더 실재로서 기능하는 이미지를 창조하고, 창조한 이미지로 서로 소통하곤 한다(김규보, 2018). 즉, 창조한 이미지가 원형보다 더 실존적인 기능을 하는 문화가 창출된 것이다. 이런 현실 가운데 성장하는 세대들은 원본의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원본보다 더 원본처럼 기능하고 소통하는 이미지가 원본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화를 소비하는 세대는 자연스럽게 원형으로서의 보편 진리, 절대자의 존재, 종교적 가치에 무관심해지고 자기 위안을 주는 신을 스스로 창조해낸다(김규보, 2018). 그 결과 종교적 보편 진리를 제시하는 성경적 세계관은 점차 현대 세대에게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 가운데 James Smith(2016)는 가정도 자기애적 만족의 도구로 전략해 버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언약 가정은 대안적 세대를 양산한다. 언약 가정에서 전수되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족문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가치와 실천이 도전해 올 때, 오히려 그것을 성경적 기준으로 분별하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언약 가운데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천할 뿐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사회구조 가운데 성경적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하는 대안문화

(counterculture)을 형성한다(VanGemeran, 2010).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 형성의 기초가 된다. 바빙크(2012: 134)의 지적처럼 가정은 “사회의 도덕적 안녕(the moral well-being of society)”을 이룬 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 관계 속에서 배움으로써 사회에 적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은 자유와 연합, 독립과 의존, 권위와 순종, 평등과 차이 등과 관련된 성경적 윤리를 체득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사회 형성과 개혁의 기초를 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약 가정의 각 구성원은 그들이 속해있는 다양한 삶의 유기체적 사회 구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실천을 흘려보낼 사명이 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가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언약 가족은 현대 사회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작은 하나님 나라(little kingdoms)”이다(Smith, 2016: 125).

III. 닫는 글

지금까지 바빙크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에 대한 언약의 실천신학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된다. 둘째, 가정의 주권은 남편도 아내도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 셋째, 가정은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순종의 의무와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 성화되어 간다. 언약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죄 죽임을 실천하며 함께 하나님 형상의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 넷째, 가정은 하나님 나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거시사회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이와 같은 언약의 실천적 함의는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실천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천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아직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살펴본 실천신학적 함의를 바탕으로 가족생활주기와 대상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성경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가 성경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기초적 자료로서 공헌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

- 김규보 (2018). 시물라크르 세대와 “들음” 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 기독교 교육과 상담의 통합 접근. **성경과 신학**, **85**, 101-134.
- 김규보 (2019).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그리스도 답음의 실천적 함의. **성경과 신학**, **90**, 99-140.
- 김준 (2008).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 상담의 용서 문제. **복음과 상담**, **10**, 146-171.
- 김준 (2017). 부부 갈등과 용서: 자기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적 관점. **복음과 상담**, **25**(1), 9-34.
- 김준수 (2010). 교회 안의 가정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와 신학 총서 1: 가정 사역** (pp. 92-103). 서울: 두란노.
- 문병호 (2016). **기독론: 증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설은주 (2010).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안경승 (2009). 결혼에서의 용서. **복음과 상담**, **10**, 37-66.
- 엄예선 (2007). **한국 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이희성 (2013). 언약의 영속성 관점에서 본 구약의 자녀교육. **개혁논총**, **28**, 43-74.
- 우병훈 (2013).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개혁논총**, **26**, 297-331.
- 유영주, 정민자 (1993).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 한국가족학연구회편, 가족학, 하우.
- 오윤자 (199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I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09-229.
- 정정숙 (1994).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 정현숙 (2016). **가족생활교육(2판)**. 서울: 신정.
-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한병수 (2014). 언약의 통일성: 칼빈과 리더포드 중심으로. **개혁논총**, **31**, 79-121.
- 한병수 (2015). 언약의 교부적 통일성. **ACTS 신학저널**, **23**, 35-68.
- Alexander, I., & Luck, S. (2018). **굿바이 가족 트라우마**(박지희 역, *Den*

- Generation-Code*). 서울: 을류출판사. (원전 2016 출판)
- Balswick, J. O., & Balswick, J. K. (1995). *크리스천 가정*(황성철 역, *The Family*). 서울: 두란노. (원전 1989 출판).
- Bavinck, H. (2011a). *개혁교의학 1*(박태현 역, *Gereformeerde dogmatiek*).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895 출판).
- Bavinck, H. (2011b). *개혁교의학 3*(박태현 역, *Gereformeerde dogmatiek*).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985 출판).
- Bavinck, H. (2012). *The Christian family*, Nelson D. Kloosterman (trans). Grand Rapids MI, Christian Library Pres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NY: Basic Books.
- Bowlby, J. (1990).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NY: Basic Books.
- Bredehoft, D. J., & Walcheski, M. J. (2009). *Family life education: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Minneapolis, MN: NAT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Calvin, J. (2011).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H. Beveridge, Trans.). Seattle, WA: Pacific Publishing Studio.
- Conoley, C. W., & Conoley, J. C. (2009). *Positive psychology and family therapy: Creative techniques and practical tools for guiding change and enhancing growth*. Hoboken, NJ: Wiley & Sons.
- Denton, W. H. (1990). A family systems analysis of DSM-II-R.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2), 113-125.
- Doherty, W. J. (1995). Boundaries between parent and family education and family therapy: The levels of family involvement model.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44(4), 353-358.
- Edwards, J. (2014).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Updated to modern english*. (J. Dollar, Ed.). Scotts Valley, CA: CreateSpace Publishing.
- Eglinton, J. (2010). Bavinck's organic motif: Questions seeking answers. *Calvin Theological Journal*, 45(1), 51-71.
- Fisher, B. L., & Kerckhoff, R. K. (1981). Family life education: Generating cohesion out of chaos. *Family Relations*, 30(4), 505-509.

- Garland, D. R. (2012). *Family ministry: A Comprehensive guide*. Downers Grove, IL: IVP.
- Gearing, R. E. (2008). Evidence-based family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psychotic disorders.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7*(1), 2-11.
- Goldstein, M. J., & Miklowitz, D. J. (1995). The effectiveness of psychoeducational family therapy in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c disorde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4), 361-376.
- Hendrix, H. (2007). *Getting the love you want: A guide for couples*. New York, NY: Henry Holt & Company.
- Joseph, A. (2007). 회개에 참된 의미(이길상 역, *An alarm to the unconverted*). 서울: 목회자료사. (원전 1671 출판).
- Keller, T. (2014). 결혼을 말하다(최중훈 역, *The Meaning of marriage*). 서울: 두란노. (원전 2011 출판).
- Kerckhoff, R. K. (1964). Family life education in America. In H. T. Christensen (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 881-911). Chicago, MI: Rand McNally.
- Kiosses, D. N., Wright, L. C., & Young, R. C. (2017). Psychotherapy and psychosocial interventions, family psychoeducation, and support for older age bipolar disorder. In S. W. Lehmann & B. P. Forester (Eds.), *Bipolar Disorder in Older Age Patients* (pp. 169-189).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Leahy, R. L. (2015). *Emotional cchema therapy*.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iang, P., Xu, Y., Zhang, X., Ding, C., Huang, R., Zhang, Z., ... Huang, J. (2015). CRISPR/Cas9-mediated gene editing in human triploid zygotes. *Protein & Cell, 6*(5), 363-372.
- Lowery, F. (2003).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임종원 역, *Covenant marriage*).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원전 2002 출판).
- Lukens, E. P. (2017). Psychoeducation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In J. Lebow, A. Chambers, & D. C. Breunlin (Eds.), *Encyclopedia of Couple and Family Therapy* (pp. 1-6).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Mace, D. R., & Mace, V. (1974). *We can have better marriages if we really want them*. Nashville, Abingdon Press.
- Maltby, L. E., & Hall, T. W. (2012). Trauma, attachment, and spirituality: A case stud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0(4), 302–312.
- Muller, R. A. (2003).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The trinity of go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Muller, R. A. (2007). Toward the pactum salutis: Locating the origins of a concept.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18, 11–65.
- Noebel, D. A. (2013). *충돌하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시대의 이해*(류현진, 류현모 역, *Understanding the Times*).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원전 2005 출판).
- Owen, J. (1991). Of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In W. H. Goold (Ed.), *The Works of John Owen* (p. 6:12–119). Edinburgh, UK: The Banner of Truth Trust.
- Piper, J. (200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백금산 역, *God's passion for his glory*).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998 출판).
- Piper, J. (2013). *결혼 신학: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일시적 결혼*(이은이 역, *This momentary marriage*).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09 출판).
- Smith, James K. A. (2014)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 Somerville, R. M. (1967).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life education and sex edu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374–389.
- Tennant, J. (1989). Family life education: Identity, objectives, and future directions. *McGill Journal of Education*, 24, 127–142.
- Todd, E. (1985). *The explanation of ideology: Family structures and social systems*. London: Basil Blackwell.
- VanGemeren, W. A. (2010).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An introduction to the prophetic literature*. Grand Rapids, MI: Zondervan.
- Virkler, H. A. (2006). *외도의 심리*(김현진, 문희경 역, *Understanding, healing and preventing affairs in christian marriages*). 서울: 솔로몬. (원전 1992 출판).
- White, J. M., Klein, D. M., & Martin, T. F. (2014). *Family theories*. T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Wright, H. N. (1982). *Seasons of a marriage*. Raleigh, NC: Regal Book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2011), *NCFR FACT SHEET*
<https://www.ncfr.org/cfle-certification/what-family-life-education>
accessed at 2019.3.30.

【 Abstract 】

Herman Bavinck's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a Biblical Family Life Education

Kim, Kyubo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paper argues that Herman Bavinck's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Family Life Education. For Bavinck, the family is a covenantal community driven by God. According to Bavinck, the covenant is originated by the triune God from the eternity. Through Christ's merit, his people eternally enter the covenantal relationship with God. Bavinck stresse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covenant. First, the covenant has its origin only in God's grace. Second, the covenant highlights God's sovereignty over his people. Third, the covenant in essence is unilateral, but it turns out bilaterally. Fourth, the covenant embraces the organic unity of his creation. These aspects of the covenant contain practical values on Family Life Education. First, grace is the origin of the family. Second, the owner of the family is God. Third, family members voluntarily obey one another in love, and thereby they together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which includes forgiveness and mortification of sin. Fourth, the family is a channel through which its members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and carry its grace and value into a broader society. These implications will be able to provide practical theological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biblical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Key words: Herman Bavinck, the covenant, family, family ministry, a
Biblical family life education